

검수완박(檢搜完剝), 그 이후

박인환
(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/ 변호사)

1. 검수완박(檢搜完剝) :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

1)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

- 2022. 3. 9. 더불어민주당 대선 패배
- 4. 12.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
: 4월 중 ‘검수완박’ 처리 당론 채택
- 4. 30. 검찰청법, 5. 3. 형사소송법 각 국회 본회의 통과
- 5. 3. 오전 국회 통과, 당일 오후 2시 국무회의 심의 공포

-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과 6대 중대범죄
부패범죄(뇌물액 3억 이상)
경제범죄(피해액 5억 이상 횡령, 배임 등 특경법위반)
공직자범죄(4급 이상), 선거범죄, 방위사업 범죄, 대형참사 범죄

- 검수완박법 공포 4개월 후 시행 및 중수청 설치

2) 회기 쪼개기, 위장탈당(통정허위표시), 당일치기(국회입법과 대통령 공포)

- 민주당 ‘처럼회’ 주도 : 강성 초선의원
- 국회선진화법, 필리버스터,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
- 양향자의원, 민형배 의원
-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대 오후로 변경
- 검수완박 심의 9분 전 문대통령 초상화 보면서 흐뭇 ‘이제 역사의 세계로’
- 검찰의 집단반발, 사법파동(?)

3) 입법의 시기, 목적, 절차(due process of law)

4) 민주당 정권의 사법개혁

5)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검찰개혁의 완성 명분

2. 검사, 검찰총장, 검찰청 등 검찰제도와 헌법

1) 헌법 제12조 제3항

: 체포 · 구속 · 압수, 수색과 檢事의 영장 청구권

헌법 제89조 : 檢察總長의 임명을 위한 국무회의 필요적 심의

2) 검사, 검찰의 한자어 ‘檢事’, ‘檢察’

- 檢 : 사물을 조사하다(調査할 검), 사태의 내막을 검사하다(檢査할 검)
- 숙제검사(학업 평가), 신체검사(등급 판정), 식품검사(음용가부 판정)
- 察 : 자세히 보고 살피다(살필 찰)

3) 헌법상 기소사 또는 공소사, 공소청이 아니라 檢事, 檢察廳

- 검사제도는 기소가 아니라 사건의 수사, 조사가 핵심
- 수사는 법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

4) 검사의 수사권 박탈 : 수사와 기소(여부)는 분리될 것이 아님

- 기소는 수사의 결론에 해당
- 醫師의 진찰권 박탈(처방권), 判事의 재판권 박탈(선고권)
- 공산국가 : 검사나 판사는 黨과 人民이 시키는 대로 기소, 선고

5) 체포 · 구속 · 압수 또는 수색은 수사의 방법(강제수사)

6) 수사는 공정성과 함께 수사의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요구

- 검사는 판사와 동일한 자격 요구
- 검사는 준사법기관 :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

3. 검수완박은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위헌 : 법률만능주의

- 1) 헌법은 국민이 검사의 수사를 받을 권리를 전제로 해서 규정
- 2) 검사 및 검찰제도는 자의(字意) 그대로 헌법제정권자가 수사기관으로 헌법상 설치 예정하였던 기구라는 점에서 헌법기관이고 헌법제도임,
 - 헌법상 보장되는 검사제도의 폐지는 가능한가?
 -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 가능한가?
 - 경찰청장, 검찰청장 : 검찰총장
- 3)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(主宰者)
: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

- 4)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검사제도의 폐지로 헌법개정 사항
(국민의 합의)
-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확인을 위한 국민투표 가능
 - 국회의 입법독재 : 국민의 저항권(국회해산 여부)
- 5)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 : 국가정체성 수호
-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는 순간 헌법위반 : 검사제도 폐지
 - 이제 와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강변
- 6) 중대범죄수사청(한국형 FBI)의 설치?
- 국가사법제도의 해체 : 공수처, 중수청, 국수본, 경찰, 지방경찰, 검찰
 - 현재도 경찰은 범죄의 90% 이상 1차 수사
 - 나아가서 법원 등 사법부 개혁?

4. 검수완박 이후 새 정부의 대응

- 1) 무지(無知)한 운동권 아마추어 정권의 적폐 청산
 - 판검사,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의원 및 법무장관의 사법농단
 - 문 대통령 조차 법조인 출신(그나마 자칭 인권변호사)
- 2) 70년 이상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 유지
- 3) 검수완박법 위헌소송(헌법소원)
: 국민의 검사의 수사를 받을 권리
- 4)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: 퇴임 대통령 탄핵 가능성

5) 검수완박법 폐기 및 국회해산을 위한 국민투표

-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구현 : 국민(주권자)의 의사가 국회보다 상위
- 국회의 입법독재에 대한 견제 수단

* 헌법 제72조(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)

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, 국방,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.

* 국민의힘

- 4. 27.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효력정지(본회의 부의 금지) 가처분 신청
- 4. 29. 권한쟁의 심판청구

6) 중수청설치법 제정 저지 : 거부권 행사 등

7) 시행령(대통령령) 정치 : 부패범죄, 경제범죄 등 검찰수사의 범위

8) 검수완박법 시행 유예기간 4개월 최대한 활용